

제290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
행정·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
[2022.9.19.10:00]

겸재정선미술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검 토 보 고 서



2022. 9. 19.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·재무위원회

겸재정선미술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

2022년 9월 19일
전문위원 장 석 현

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: 2022 - 65
- 나. 제 출 자: 강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: 2022년 8월 23일
- 라. 회부일자: 2022년 9월 5일

2. 제안이유

겸재정선미술관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2022년 11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동의¹⁾를 구하고자 함.

1) ※ 재위탁·재계약 시 상임위원회 보고 또는 의회 동의

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나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, 또한 조례 개정 후(2019.7.17.)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

3. 주요내용

가. 위탁시설 개요

시 설 명	겸재정선미술관
소 재 지	양천로47길 36
개 관 일	2009. 4. 23. (준공 2008. 11. 30.)
시설규모	3,305㎡ (지상 3층)
직원현황	10명(관장1, 실장1, 학예1, 행정1, 교육1, 홍보1, 기술2, 미화2)
주요시설	기획전시실, 기획전시실Ⅱ, 겸재정선기념실, 다목적실 등
유물현황	336건 538점 (회화류 167건 278점, 전적류 29건 76점, 복제물 140건 184점)
現수탁기관	강서문화원 (2017. 12. 1. ~ 2022. 11. 30.)

나. 위탁사무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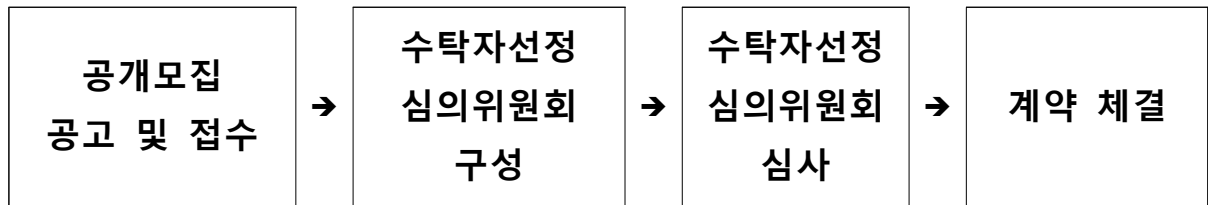
- 시설물(건축물, 전시물, 부대시설 등) 유지·관리
- 미술관 고유사업(유물수집·보존·관리·전시, 교육·체험프로그램 운영, 미술관 관련 행사, 기타 미술관 설립목적에 필요한 사업)
- 기타 수익사업 및 상호 협의 하에 정하는 사업

다. 위탁기간: 5년(2022. 12. 1. ~ 2027. 11. 30.)

라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- 2023년 겸재정선미술관 운영예산(안): 798백만원
 - 인건비 424백만원, 관리운영비 233백만원, 기획전시 등 141백만원

마. 수탁자 선정방식



바.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

- 전문성 있는 기관에 겸재정선미술관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 주민의 만족도 제고

사. 위탁운영체 신청 자격: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공공기관

4. 관계법령

- 가.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
- 나.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, 제6조, 제7조, 제10조, 부칙 제3조

5. 검토의견

- 본 동의안은 겸재정선미술관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²⁾됨에 따라 겸재정선미술관 운영에 대한 재위탁³⁾을 추진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부칙 제3조에 따라 의회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,
- 겸재정선미술관은 겸재 정선의 화혼을 기리며 다양한 전시, 교육, 연구 등 미술관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겸재 전문 미술관이자 강서구 대표 문화향유 공간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음.
- 또한, 겸재정선미술관의 운영사무는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및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등의 기준에 따라 해당 분야에 대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기관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,

2) ※ 겸재정선미술관 위탁 연혁

연 번	위탁기간	비 고
1	2008. 12. 1. ~ 2011. 11. 30.	3년 위탁
2	2011. 12. 1. ~ 2014. 11. 30.	3년 위탁
3	2014. 12. 1. ~ 2017. 11. 30.	3년 위탁
4	2017. 12. 1. ~ 2022. 11. 30.	5년 위탁

3) ※ 재위탁 및 재계약 정의

- 가. 재위탁: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
- 나. 재계약: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

- 위탁체 선정에 있어 공개모집과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위탁을 추진하여 구민들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꾸준한 지도·감독 및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□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4조(운영의 위탁) ①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 이라 한다)은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의 운영을 비영리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②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(이하 “수탁자” 라 한다)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□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여성·청소년·아동·가족 복지를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
2. 노인·장애인 복지를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
3. 보건·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
4. 교통, 주차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
5. 문화·예술·영상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
6. 노동자복지, 자활, 취업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
7. 교육·교양·체육·공원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
8.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

제7조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사무는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(이하 “의회” 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③ 1년 단위 이하로 계약하는 연례 반복적 사무는 제1항과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한다.

제10조(수탁기관의 선정기준)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.

1.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·기구·장비·시설 및 기술 보유 정도
2. 재정 부담능력 및 책임능력, 공신력
3.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
4.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연관성
5.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

부칙(제1240호, 2019.7.17.)

제3조(승인 및 동의 절차의 특례)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자치 사무의 경우 제7조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례 공포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